

제6장 신용장과 무역결제



신용장 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하는 書狀으로,
신용장상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인수(Acceptance), 지급(Payment), 또는 매입(Negotiation)을
확약하는 증서(Instrument)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기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확실한 수입상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증서임

신용장 방식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autonomy of Letter of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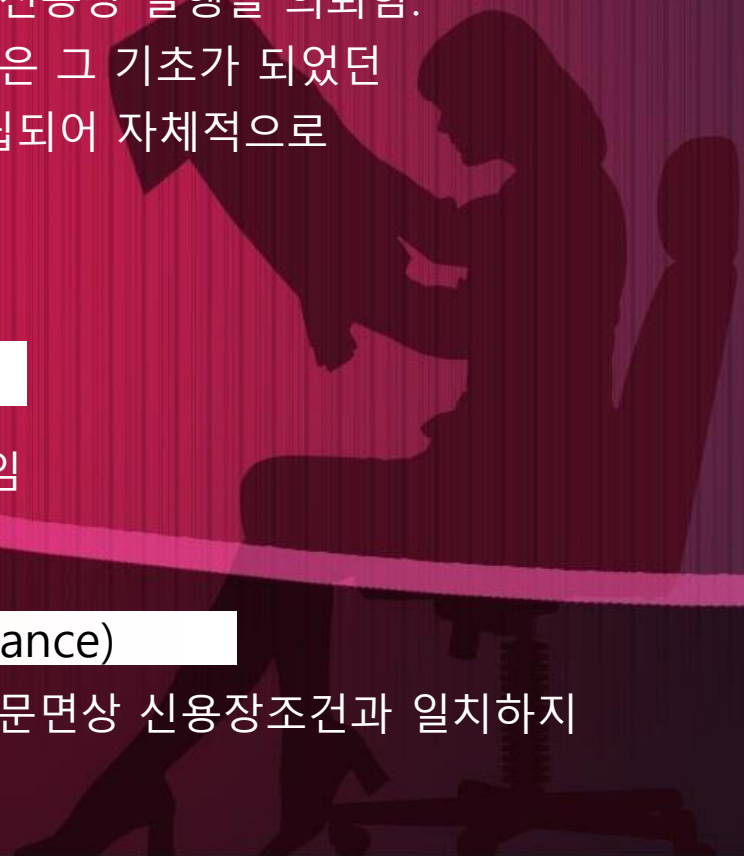
-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가 계약서 지급조건에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하면, 매수인인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의뢰함.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은행에서 발행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됨.

2 신용장의 추상성(abstraction of Letter of Credit)

-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임

3 신용장의 엄밀일치성(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신용장 거래의 효용성

은행의 입장

첫째,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하기 때문에 수출국에 소재하고 있는 매입은행들로서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이 보장되어 있어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둘째, 발행은행입장에서도 신용장 발행 시 수입상으로부터 수입금액에 대한 담보 등을 제공 받기 때문에 수출상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급확약에 따르는 위험을 수입상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 매도인 : 선적완료와 동시에 거래은행에서 화환어음을 할인하여 수출대금을 확보할 수 있어 동시급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매수인 : 계약물품을 증권화한 선적서류와의 상환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동시급과 유사한 효과를 얻음

신용장 방식

신용장의 한계

첫째, 신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조건에 부합하는 반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시하면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조건부 대금지급확약이지 그 자체가 유통될 수 있는 독립된 대금지급수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신용장방식을 통하여 거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에서 약정된 물품을 인수한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수출상이 신용장거래의 특성인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을 악용하여 계약물품이 아닌 물품을 선적하거나 아예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발행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수출상이 의도적으로 수입상을 속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용장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상은 자기가 계약했던 물품을 모두 정확하게 입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셋째, 신용장거래의 특성상 서류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상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선적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상이 의도적으로 서류상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신용장 기본당사자



발행은행 (Issuing Bank)

-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의 상환으로 인수 및 지급할 것을 약속한 은행

수익자 (Beneficiary)

-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지급을 받아 이익을 얻는 자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약속하는 은행

신용장 기타당사자

발행의뢰인(Applicant)

- 수익자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거래은행(발행은행)에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자



통지은행(Advising Bank)

- 신용장발행은행의 요청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Notify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부름. 통상 매도인이 소재하는 수출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본·지점이 통지은행이 되며, 본·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의 환거래은행이 통지은행으로 이용됨

신용장 기타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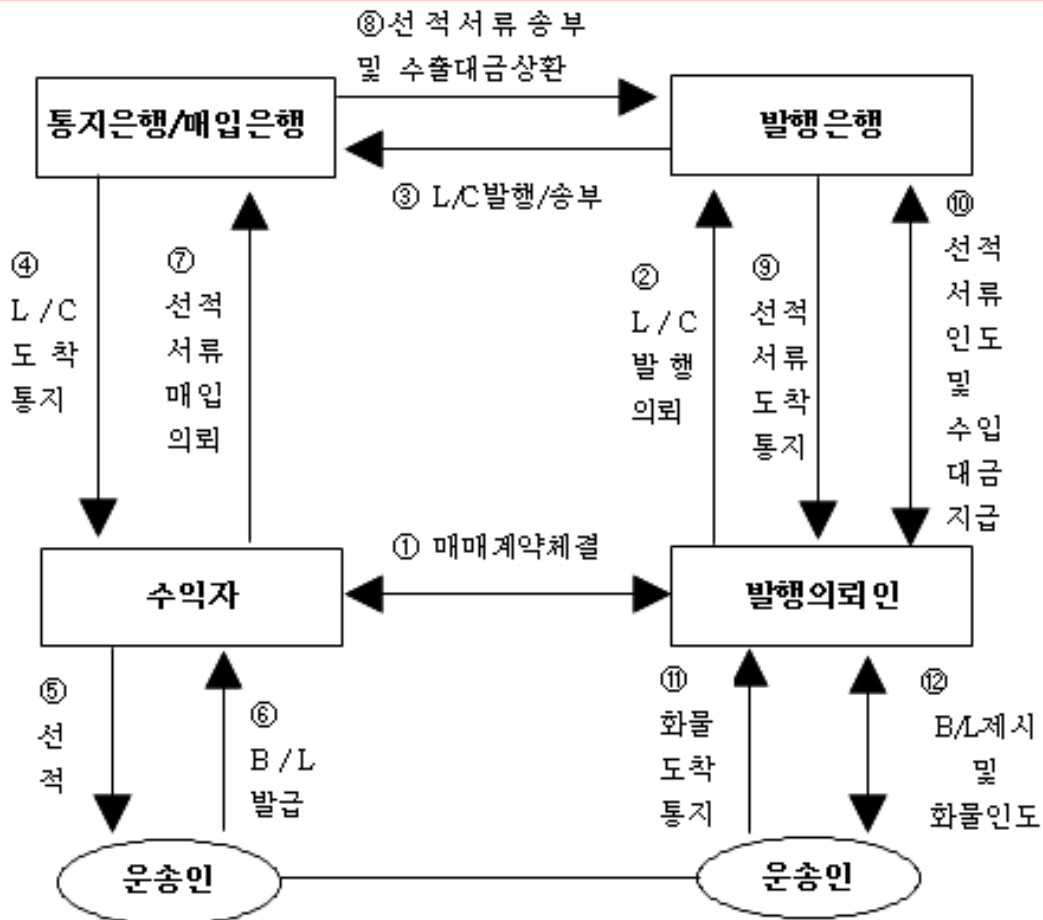
지급은행(Paying Bank)

- 신용장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수권된 은행
- 일반적으로 개설은행 자신이나 개설은행의 지정을 받은 예치 환거래은행 (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또는 발행은행이 결제대금의 전액을 미리 위탁시켜 둔 지정은행 만이 지급은행이 될 수 있음

인수은행(Accepting Bank)

-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할 때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 or Time Bill)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그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

신용장거래 과정



신용장의 종류



화환신용장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상품거래에 따른 환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및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이다.

무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은 환어음을 담보하는 운송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신용장으로 무담보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신용장의 종류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etter of Credit)

- 신용장이 발행된 후 발행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든지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신용장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 신용장상에 revocable(취소가능)이란 표시가 있을 경우 취소가능신용장이 됨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 발행은행이 신용장 발행 후 수익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에 "Irrevocable"(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혹은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

신용장의 종류



확인신용장(Confirmed Letter of Credit)

- 신용장의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은행, 특히 국제적으로 신용있는 은행이 발행은행의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약속한 신용장이며, 무확인신용장이란 이러한 약속이 추가되지 않는 신용장

무확인신용장(Unconfirmed Letter of Credit)

- 확인은행의 약속이 추가되지 않은 신용장



신용장의 종류



매입신용장(Negotiation Letter of Credit)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여 발행은행이 수익자 뿐만 아니라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도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

지급신용장(Straight Letter of Credit)

-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이 없고 단지 신용장개설은행이나 발행은행의 환거래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신용장

신용장의 종류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일람출급 환어음(sight draft)을 발행하거나 선적서류를 직접 발행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일람한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

신용장의 종류



내국신용장(Local Letter of Credit)

- 수익자인 수출상이 수출상품이나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공급받기 위하여 국내의 원자재공급자나 완제품공급자 앞으로 자신이 해외에서 받은 신용장을 견질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들 공급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 수출상이 수입상을 믿고 상품대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신용장

신용장의 종류



회전신용장(Revolving Letter of Credit)

-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동일물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해야 할 경우, 매 거래시마다 일일이 신용장을 발행하면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 내에서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

전대신용장(Red Clause(packaging) Letter of Credit)

- 수출상이 선적전에 상품의 생산·집화 또는 구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선급(advance payment)을 수권한 신용장

신용장의 종류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etter of Credit)

- 신용장이 발행된 후 발행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든지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신용장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 신용장상에 revocable(취소가능)이란 표시가 있을 경우 취소가능신용장이 됨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 발행은행이 신용장 발행 후 수익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에 "Irrevocable"(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혹은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어 수익자 (First Beneficiary 또는 Original Beneficiary)가 제3자(Second Beneficiary)에게 1회에 한하여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신용장
- 양도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명시 없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으로 보통 신용장은 양도불능신용장이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가능신용장



-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게 발행된 이상 발행의뢰인의 파산과 관계없이 발행은행은 이러한 어음의 지급이나 인수의 의무를 면치 못함. 그러나 만일 그 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게 발행되었을 때는 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어음의 선의의 소지자(대개는 매입은행)가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면 상환가능신용장,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이라고 함.
- 우리나라에서는 "Without recourse" 신용장이 인정되지 않으나 영·미법에서는 Without recourse 신용장하에서 "Without recourse"라는 문언을 어음상에 기재하면 법적으로 유효함 (즉,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청구하지 못함)

신용장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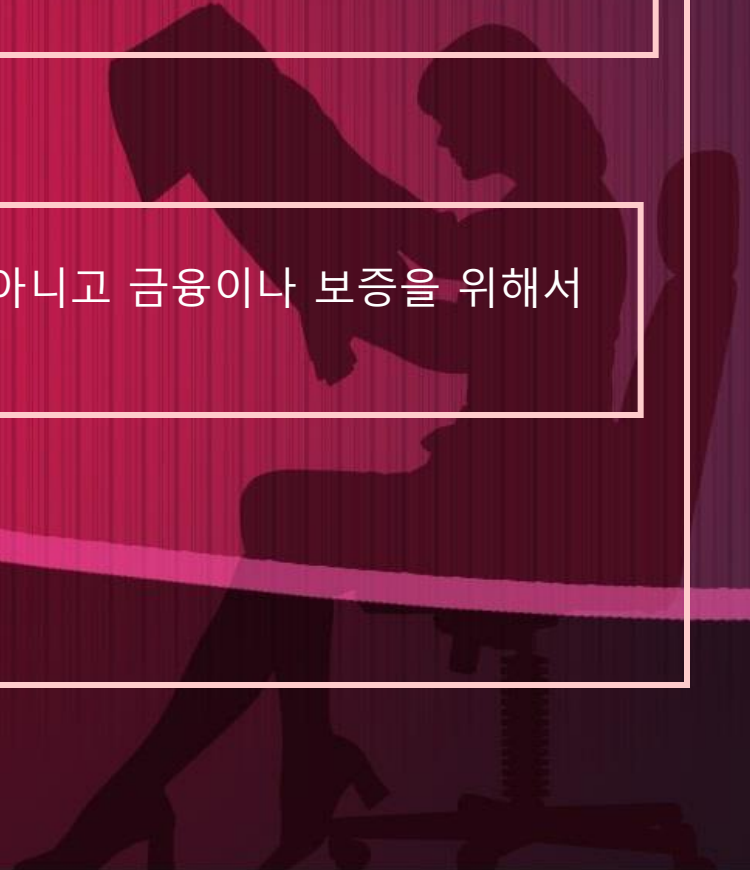
Back to Back Credit

-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간에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무역을 위하여 쓰여지는 결제수단



Stand-by Credit

- 물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서 발행되는 Clean 신용장



하자서류의 매입

(1) 서류하자의 주요내용

수출환어음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의 사유가 되는 하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선적기일 경과(late shipment)
- ② 제시기간 경과(late presentation)
- ③ 환적(transshipment)
-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⑤ 할부선적 상이(irregular instalment shipment)
- ⑥ 수령선화증권(received B/L)
- ⑦ 선박 상이(different shipping line)
- ⑧ 수화인 상이(different consignee)
- ⑨ 통지처의 상이(different notify party)
- ⑩ 신용장금액 초과발행(overdrawing)
- ⑪ 물품명세 상이(different description of goods)
- ⑫ 부보조건 상이(insurance not covered as in L/C)
- ⑬ 서류 불비(lack of documents)



하자서류의 매입방법

- ① 추심 후 매입
- ② 보증부 매입
- ③ 신용장 조건변경 후 매입
- ④ 전신조회 후 매입



환어음

환어음의 당사자

(1) 신용장을 근거로 한 환어음의 당사자

- ①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 즉 수출업자인 채권자.
- ② 지급인(Drawee = Accountee) :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는 채무자, 즉 발행은행 또는 수입상
- ③ 수령인(Payee) :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도 될 수 있음.

(2) D/P, D/A 에 근거한 환어음의 당사자

- ① 추심의뢰인(Principal)은 "seller", "exporter", "drawer", "consignor", "customer"를 의미한다.
- ②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을 의미한다.
- ③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추심의뢰은행 이외의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 ④ 제시은행(Presenting bank)은 지급인에게 제시를 하는 수입국의 추심은행을 말한다.
- ⑤ 지급인(Drawee)이 있는바, 이는 수입상, 즉 "buyer", "importer", "consignee"를 말한다.
- ⑥ D/P, D/A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 D/P로 간주한다

환어음의 구분

(1)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과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

- ① 화환어음은 다른 운송서류와 함께 발행되는 것이고, 무담보어음은 운송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환어음 단독으로 결제 가능함.
- ② 물품대금결제는 운송서류가 첨부되므로 화환어음이 쓰이고 수수료, 보험료, 운임 등에는 무담보어음이 쓰임.

(2) 일람불어음(sight draft, demand draft)과 기한부어음(usance bill, time draft, after sight draft)

- ① 만기일(tenor)에 따라, 어음이 제시(present)되면 즉시 지급되는 일람불 어음과 일정기간 경과 후 지불되는 기한부어음이 있음.
- ② 기한부어음은 다시 일람 후 정기불(After Sight : d/s)과 일부 후 정기불(After Date : d/d)로 나뉨. ex) at 00 days after sight(00d/s), at 30 days after date(30d/d)

(3) 상환청구가능(with recourse)과 상환청구불능(without recourse)

① 환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는 경우 환어음을 매입한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이 어음발행인에게 대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환청구 가능어음과 불능어음으로 나뉨.

② 우리나라의 환어음법상 모든 환어음은 상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됨.



환어음

환어음의 작성

(1) 필수 기재 사항

- ① 환어음 표시 : Bill of exchange라는 표시
- ② 무조건 위탁문언(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 지급에 조건을 붙이거나 지급자금, 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이 없음.
- ③ 지급인(Drawee) : "the person to whom the bill is addressed"
- ④ 지급기일 : 일람출급(at sight), 일람후 정기출급/일부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on a fixed date)
- ⑤ 수령인의 표시 : 기명식(payable to a specified person), 지시식(payable to order, payable to the order of specified person), 무기명식(payable to bearer)
- ⑥ 지급지의 표시
- ⑦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 ⑧ 발행인(drawer)의 기명날인

(2) 임의 기재 사항

어음번호, 신용장번호 신용장 발행일자, D/A.D/P어음의 표시, 환율 및 이자문언 등

팩토링(factoring)이란?

공급업자(supplier)가 구매자(debtor)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을 팩토링회사(factor)에게 일괄 양도하고 팩토링회사로부터 양도채권 금액범위 내에서의 금융지원, 구매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인수, 채권의 관리 및 대금회수, 기타 사업처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금융기법

- 전세계 팩터의 회원망을 통하여 수입상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방식의 무역결제방식으로 팩터는 수출상을 위하여 수출 채권과 관련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회수업무에 따른 장부기장 등 회계업무와 전도금융에 이르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상을 위해서는 수입을 위한 신용을 공여해 줌으로써 해외로부터 신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

국제팩토링의 당사자

1) 팩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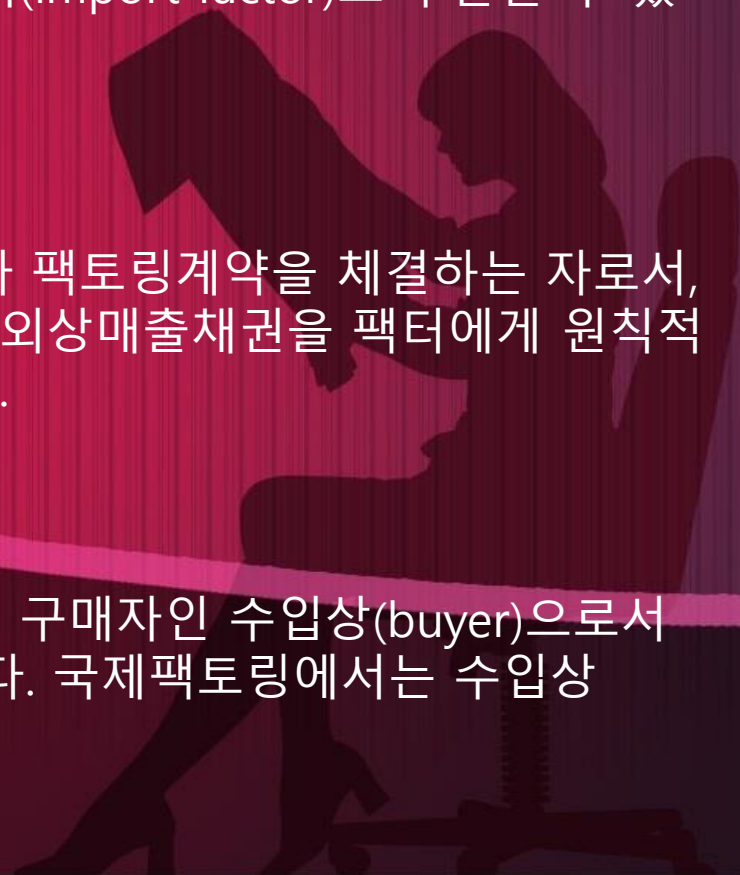
팩터(factor)는 수출상인 클라이언트(client)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팩토링회사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국제팩토링에서 팩터는 수출팩터(export factor)와 수입팩터(import factor)로 구분할 수 있다.

2) 클라이언트

수출상 또는 판매자인 클라이언트(client)는 팩터와 팩토링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이러한 팩토링 이용계약에 따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불받는 자를 말한다.

3) 커스터머

수입상 또는 구매자인 커스터머(customer)는 물품 구매자인 수입상(buyer)으로서 팩터에 대하여 제3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팩토링에서는 수입상(importer)이 커스터머가 된다.



국제팩토링의 결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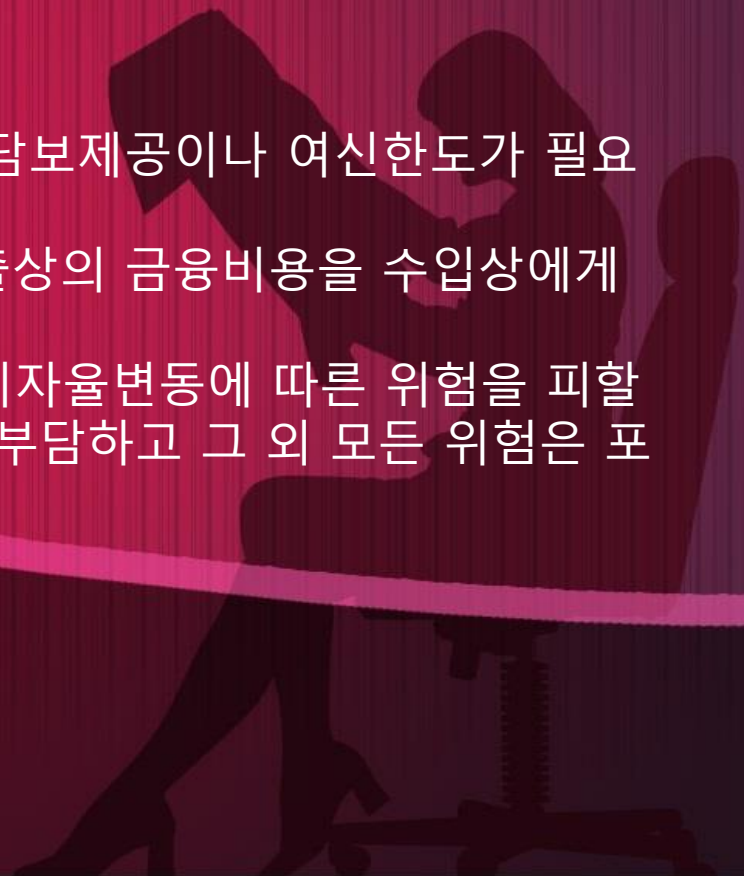
- ① 수출팩터와 수출상간에 국제팩토링계약을 체결한다.
- ② 커스터머는 수출상에 대한 신용조사를 수출팩터에게 의뢰한다.
- ③ 수출팩터는 수출상으로부터 고객리스트를 제출받아 수입상이 주재하고 있는 국가의 수입팩터에게 신용조사를 의뢰한다.
- ④ 수입팩터는 수입상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출팩터에게 통지한다. 수출팩터는 수입팩터의 신용결정 통지에 따라 거래처에 신용공여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후, 수출상은 수입상과 계약을 체결한다. 수출상은 수입상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선적을 이행한다.
- ⑥ 수출상은 수입상과의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국제팩토링 계약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팩터에게 양도하고 전도금융을 제공받는다.
- ⑦ 수입상은 채권의 만기일에 수입팩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 ⑧ 수입팩터는 지급받은 대금을 수출팩터에게 송금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팩터는 채권확보를 이행함으로써 금융의 창출, 대금회수 등의 번잡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포페이팅

금융기관이 대금결제조건을 연지급조건으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거래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의 채권을 상환청구불능(without recourse)조건으로 수출상으로부터 고정이자율로 매입하는 무역금융을 말한다.

포페이팅의 특징

- ① 포페이팅은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제공이나 여신한도가 필요 없다.
- ② 포페이팅은 고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수출상의 금융비용을 수입상에게 전가할 수 있다.
- ③ 선적 후 즉시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환율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또한 수출상은 물품인도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 모든 위험은 포페이터가 부담한다.



포페이팅의 당사자

1) 포페이터

포페이팅계약에 의하여 수출상의 연불수출어음을 상환청구불능의 조건으로 할인매입하고 이자, 수수료 등의 포페이팅비용(forfaiting cost)을 지급받는 금융업자를 말한다.

2) 수출상

연불수출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인도하고 받은 연불수출어음을 포페이팅계약에 의하여 포페이터로부터 할인·매입을 제공받는다.

3) 수입상

수출상과의 연불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보증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어음을 인도하고, 어음만기에 보증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다.

4) 보증은행

수입상이 발행하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행하는 은행이다. 포페이팅계약에 의하여 포페이터가 수출상의 어음을 상환청구불능의 조건으로 할인·매입하기 때문에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일류은행이어야 한다.

포페이팅 결제과정

- ① 포페이팅을 원하는 수출상은 연불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페이터와 수출에 따른 어음의 할인가능성을 협의하여 수입국의 위험도(country risk), 환율변동, 국제금리동향 등의 제반 위험을 고려한 포페이팅비용을 견적받아 포페이터와 포페이팅계약을 성립시킨다.
- ② 연불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을 이행한다.
- ③ 수입상은 수출상과의 연불수입계약에 따라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의 결제를 보증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획득한다.
- ④ 수입상은 수출상에게 대금결제를 위하여 수입국의 일류은행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진 어음을 발행하여 인도한다.
- ⑤ 수출상은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으로 인도받은 어음을 사전에 체결된 포페이팅계약에 의하여 상환청구불능의 조건으로 포페이터에게 할인매각한다. 이때에 수출상은 어음의 이면에 배서하여 포페이터에게 양도한다.
- ⑥ 수출상은 포페이터로부터 할인·매입한 어음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한다.
- ⑦ 포페이터는 할인·매입한 어음의 만기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보증은행에게 상환청구한다.
- ⑧ 포페이터로부터 어음의 상환청구를 받은 보증은행은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어음대금을 결제받는다.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만기에 대금결제를 받은 보증은행은 포페이터에게 매입대금을 상환한다.

무역금융

무역금융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성립하는 수출입거래와 이와 결부되어 있는 국내거래 및 해외 현지거래의 각종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일반 금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금의 융통은 수출입거래에 직접 총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의 전후에 있어 무역물품의 생산, 가공, 집하,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무역금융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서 선적에 이르기까지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화자금을 지원해 주는 협의의 무역금융뿐 아니라 더 넓게는 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시까지의 자금융통을 위한 무역어음제도, 외화대출, 연불수출금융 등이 있다.

무역금융제도는 일반금융제도와는 달리 수출업자 및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자(수출용 완제품 생산업자 포함)를 용자대상으로 수출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소요 원화자금을 용자해 주는 우대금융이다.

보증신용장 제도

(1) 보증신용장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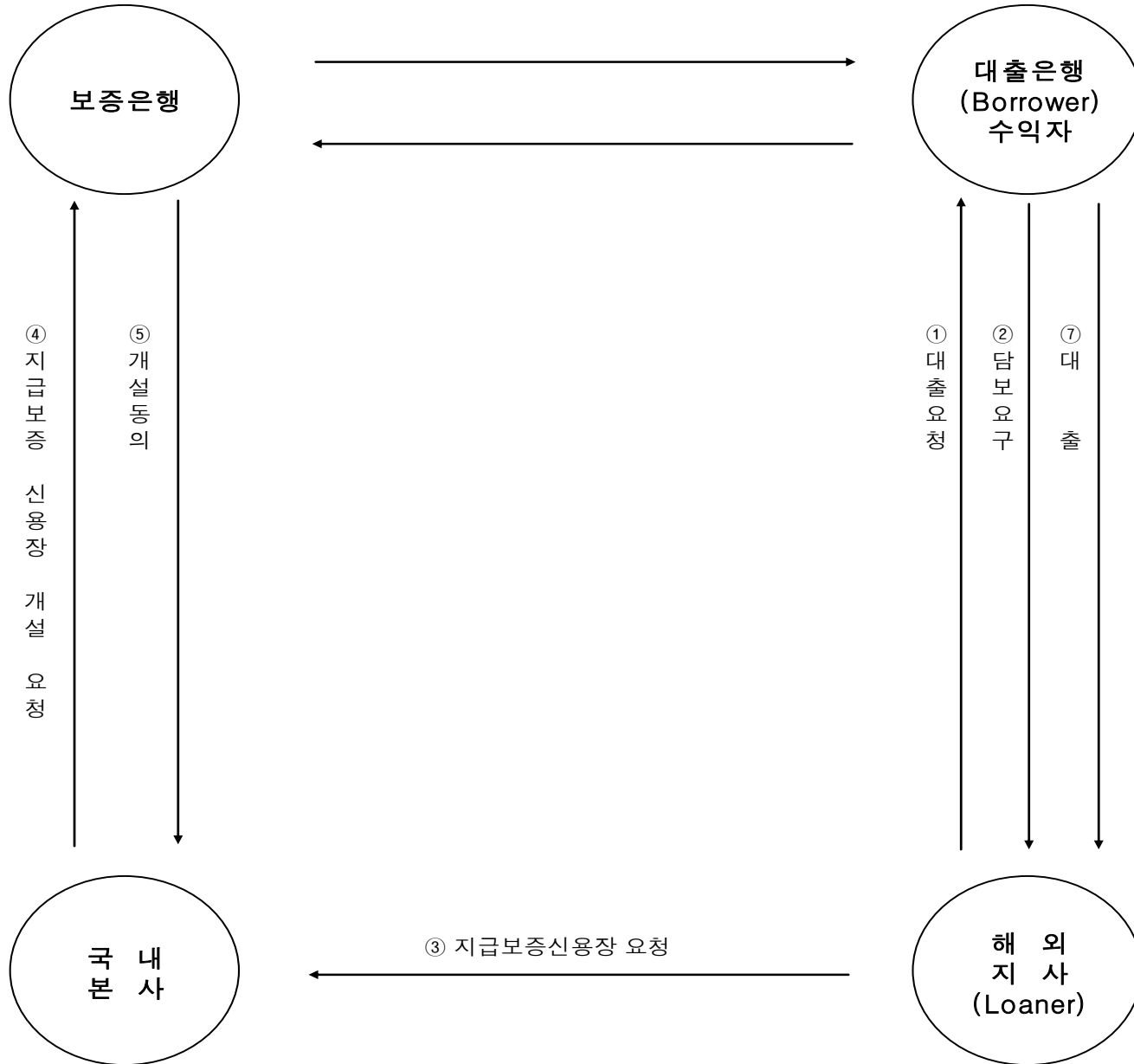
금융 또는 채권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으로 일반적으로 국내 상사의 해외지사 운영자금 또는 국제입찰의 참가에 수반되는 입찰보증(bid bond), 계약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상환보증(advance payment bond)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지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동채권을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이 해외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이다.

(2) 보증신용장의 보증 내역

- ① 수출선수금 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 ② 현재금융 담보보증
- ③ 수출계약 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 ④ 입찰보증서(Bid bond)
- ⑤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 ⑥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 ⑦ 하자보상보증서(Maintenance bond)



보증신용장제도



내국신용장제도

거래 당사자

① 발행의뢰인(구매자)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 방식에 따라 구매(또는 임가공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동 내국신용장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발행신청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역금융의 여신대상자, 즉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한 자, 여신대상 수출실적 보유자 및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자 등에 한한다.

② 수혜자(공급자)

내국신용장의 공급대상 물품을 제조·생산(또는 임가공수탁) 하여 발행신청인에게 매도하는 업체 또는 수출용 수입원자재를 공급하는 자가 수익자이다.

③ 발행은행

발행의뢰인의 신청으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으로서 발행의뢰인이 거래하는 은행이다.

④ 매입은행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물품공급을 완료한 후 동 공급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행기관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발행조건	당해업체 원자재금융 용자한도 내에서 발행	제한 없이 발급(발행근거 확인)
수출실적 인정	수출실적으로 인정	수출실적으로 인정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
발행(발급) 제한	차수 제한 없이 순차적 발급 가능 (무역금융 용자한도 내에서 발행 가능)	차수에 제한 없이 순차적 발급 가능 (거래증빙서류금액 범위 내 발급가능)
지급보증 여부	발행은행이 지급보증	발급은행의 지급보증 없음
발급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D/P, D/A 등) .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 외화표시 용역공급계약서 . 내국신용장 .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D/P, D/A 등) .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 내국신용장 . 외화입금(매입)증명서 . 구매확인서
무역금융의 수혜	무역금융 수혜 가능	무역금융 수혜 가능
관세의 환급	관세환급 가능	관세환급 가능
거래대상물품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용 완제품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용 완제품